조선 제2014-20호(2014.12.03) **중 대 재 해 속 보** (문의)052-226-0525

제공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 산업안전팀 조사자 : 조규덕, 정호석

연삭기로 사상작업중 화상

〈 재 해 개 요〉

2014년 11월 27일(목) 18시 44분경 울산광역시 소재 □□중공업 호선내 밸러스트 탱크 작업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○○산업 소속 피재자가 이동통로(Walk way)의 진공청소 작업 후 동료사원(우즈베키스탄 국적)의 청소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칼럼에 설치된 고정식 사다리와 종방향보강재(Longitudinal stiffener, 속칭 론지) 상부에 연결된 사다리식 통로를 통해 호선 바닥으로 이동하던 중 떨어져 발생한 사망 재해임

□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 : 떨어짐 / 사망 1명

□ 사고발생원인

❍ **작업장 내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지 않고 작업 실시**

- 작업장에 조명시설 설치상태가 미흡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하지 못함

❍ **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부적절한 설치**

- 사고발생 작업장의 사다리식 통로는 우측에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으나, 좌측은 미설치되는 등 사다리식 통로 설계 시 근로자의 안전이 미확보 됨

□ 재해예방 안전대책

❍ **작업장 및 이동통로에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후 작업 실시**

- 작업형태에 적합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(보통작업 : 150럭스 이상, 그밖의 작업 : 75럭스 이상)

❍ **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등의 설비를 설치 후 작업 실시**

-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 등의 보호설비를 갖추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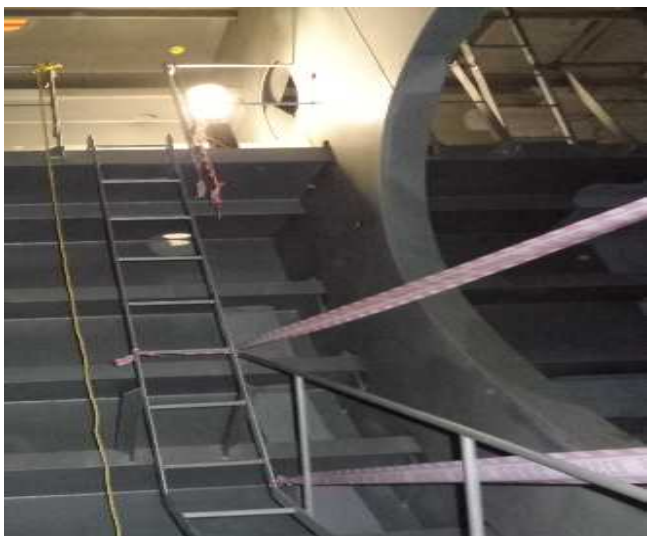

피재자가 이용한 고정식 사다리 및 사다리식 통로

본 속보는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조선업재해예방팀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종 시설의 자체점검 및 적정한 조치실시, 근로자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 바랍니다.

인터넷 주소 www.kosha.or.kr/사업안내/산업안전/조선업 재해예방 기술지도/중대재해속보 클릭